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구 미 시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6.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가. 기술력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신성장동력 사업분야(국방, 탄소, 의료기기 등)의 중소벤처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투자기관이 참여하는 전문 운용펀드사에 출자를 통해 성장잠재력이 큰 유망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육성
- 나. 이에 투자조합 출자를 위해 2016회계연도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1호 투자조합」 출자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자개요

1) 대상기관

- 기 관 명 : (주)케이앤투자파트너스
- 대표이사 : 김철우
-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2길 13 예동빌딩 9층
- 설립근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

2) 출자예정액 : 금600,000천원 (1차년도)

3) 출자근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5항
-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0조

나. 사업개요

1) 조 합 명 : 케이앤 지방상생1호 투자조합

- 한국모태펀드 2016년 2차 정시 출자사업(지방기업) 선정 조합
- 결성근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0조

* 한국모태펀드 : '05년 중소기업진흥공단 100% 출자한 정부투자기관인
한국벤처투자(주)가 운용(조성규모 2조7천억원)

2) 운 용 사 : (주)케이앤투자파트너스

3) 출 자 자

- 업무집행조합원 : (주)케이앤투자파트너스
- 유한책임조합원 :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학교, 기타
- 특 별 조 합 원 : 한국모태펀드

4) 조합결성액 : 100억원

- 연도별투자계획 (단위:억원)

구 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100	31	42	27
국비(모태펀드)	50	15	20	15
경 북 도	10	4	6	-
구 미 시	20	6	8	6
구미대학교	5	1.5	2	1.5
자 부 담	5	1.5	2	1.5
기 타	10	3	4	3

5) 존속기간 : 8년(투자4년, 회수4년) *출자금 납부 : 3년

6) 투자대상 : 신성장동력사업분야(국방, 탄소, 의료기기 등) 중소·벤처기업

7) 운영방법 : 투자상담회 개최(연2회) 및 지원협의체 운영(월1회)

8) 기대효과

- 지역경제 환경변화를 견인하는 다양한 전략사업 지원으로 지역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외부기업 유치 등의 정책목적 달성

다. 출자의 필요성

- 1) 구미시에서는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이 많으나 초기 자본금 부족으로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
- 2) 기계, 자동차, 디스플레이, 모바일 등의 기존산업과 최첨단 신 기술을 연계한 융합산업 육성
- 3) 성장잠재력이 큰 미래 유망사업에 중점 투자함으로 경제성장 동력 확보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재정법」 제18조
-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
-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0조
-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5항
- 5) 「구미시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0조

나. 예산조치 : 2016년 2회 추경예산편성(6억원)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등록)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0조(조합의 결성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그 외의 자가 출자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회사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등)

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 중소기업·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제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4.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0조(지원대상) 시장은 지방 중소기업·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소관 실 · 과		투자통상과
입 안 자	과 장	유 익 수
	담 당	유 경 숙
	담 당 자	임 애 리 (480-6034)